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638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4년 3월 8일  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교육지도시간 사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범위를 당초 12개월에서 24개월로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교육지도시간(특별휴가) 사용범위를 24개월로 수정함.(안 제24조제5항).

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 
한다.

안 제24조제5항 중 “12개월”을 “24개월”로 한다.

〈 수정안 조문 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략)  <신설>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 ⑤ <u>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</u> 은 <u>12개월의 범위</u> 에서 <u>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</u> 등을 위한 <u>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</u> 을 받을 수 있다.	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개정안과 같음)  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<u>24개월</u> 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##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#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대비하기위한”을 “대비하기 위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이하“출장공무원””을 “이하 “출장공무원”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15일 범위 안”을 “15일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3조제2항 단서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안”을 각각 “범위”로 한다.

제24조제5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5항(종전의 제14항) 중 “제13항”을 “제1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7항 및 제18항을 각각 제16항 및 제17항으로 한다.

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26조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시  
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  
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  
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 
할 수 있다

제13조(근무시간 등) ① (생략)

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  
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  
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  
다. 다만,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  
성질·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  
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  
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  
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  
영할 수 있다.

③·④ (생략)

제22조(병가) ① 소속기관의 장은  
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  
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 
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  
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병이나  
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·외  
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 
계산하고, 제21조제4항에 따라  
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

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--  
-----  
----- 15  
일의 범위-----  
-----

제13조(근무시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병가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  
-----

수는 이를 병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생략)

<신설>

⑤ (생략)

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⑦ ~ ⑬ (생략)

⑭ 제13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
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 범위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특별휴가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,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⑦ -----  
----- 제6항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⑧ ~ ⑭ (현행 제7항부터 제13항까지와 같음)

⑮ 제14항-----

